

「2023년 함께하는 장애인 평생학습 사업」 공고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모두가 함께하는 장애인 평생학습 제공을 위해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 발굴’ 「함께하는 장애인 배움교실」 ‘지역사회 다채로운 평생학습을 즐기는’ 「함께하는 평생학습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합니다.

이에 2023년 함께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2월 28일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함께하는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사업

나. 공고 및 접수기간 : 2023년 2월 28일(화) ~ 3월 27일(월)

다. 사업 추진 기간 : 선정일로부터 ~ 2023. 11. 30.(목)

라. 모집분야

프로그램 명	지원규모	지원액
① 함께하는 장애인 배움교실 - 기관 우수 (실내 위주) 프로그램 지원	10개 이내	• 기관 당 4,900,000원 이내
② 함께하는 평생학습공동체 - 평생학습공동체 활동(실외 현장방문) 프로그램 지원	10개 이내	• 기관 당 4,900,000원 이내

※ 심사결과 등 상황에 따라 선정 기관 수 및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2. 모집 분야

가. 함께하는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사업

구 분	내 용	
지 원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교육 유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단체, 협동조합 등 유희공간을 보유한 기관·단체 * 사업운영에 따라 '24년 계속 지원 가능 	
운 영 방 법	지원 유형	<p>① “함께하는 장애인 배움교실” 장애인 평생학습 특화 발굴 (실내 위주) 프로그램 지원</p> <p>② “함께하는 평생학습공동체” 장애인 평생학습공동체 (실외 현장방문 위주) 프로그램 지원</p>
	주 제	<p>장애유형을 고려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발전 및 확산 가능한 실내 프로그램 ‘여기서행복한데이’ 운영</p> <p>생활권 내 다양한 평생학습공동체 활동을 배우고, 지역사회 체험활동 (참여형, 실습형, 실천형) 등 지역사회 참여 확산 가능한 실외 현장방문 평생학습공동체 ‘해피방굿데이’ 프로그램 운영</p>
사 업 비 사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비 사용 기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료, 홍보비, 교재비, 체험학습비, 재료비 등 <p>※ 재위탁 불가</p>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3. 3. 17.(금) ~ 3. 27.(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신청방법 : 이메일(lifelongel@naver.com) 접수

다. 제출 서류 : 신청공문,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라. 문의처 : 평생교육팀 공모사업 담당자(☎ 061-285-9488)

4. 선정 방법

가. 심사 방법 : 자체 심사위원회 전문가 심사단을 통한 '사업 계획서' 서면 심사(필요 시 현장실사 가능)

나. 선정 기준 : 사업 심사 항목 및 평가지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심사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단, 심사 결과 심사위원 평점이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

다. 평가 내용 : 기관(단체)역량 / 사업내용 / 파급효과 / 예산 편성의 적절성 등

라.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외 대상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 받는 경우
- 특정지역, 기관·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 정치적 목적, 특정 종교 활동을 위한 사업
- 보조금 위반행위 단체·개인(관련 법령·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 소관 심사위원회에서 사업비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정하는 사업
- 사업과 관련하여 진흥원의 지원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 받고,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실적·정산보고서가 완료하지 않은 기관·단체

* 사업비 반환 및 향후 2년간 공모 참여 제한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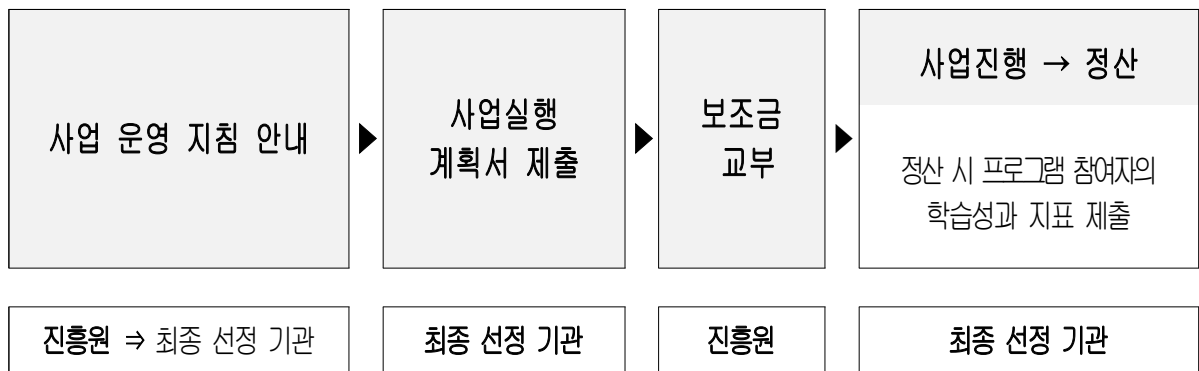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 작성 등 부정확한 방법으로 지원한 경우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극히 부진하게 운영할 경우

5. 향후 일정

가. 최종 결과 공고 : 2023. 4. 6.(목) 예정 / 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 탈락 기관·단체에 대한 별도 안내 없음

나. 선정 후 일정



다. 사업비 교부 및 사업평가

사업비 교부 및 사업평가

- 선정 기관(단체)은 지원 결정금액에 맞추어 사업실행계획서와 사업비 신청서 제출
- 사업완료 시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현장점검)과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선정 시 반영하고, 정산결과 사업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6. 유의사항

가. 심사 등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및 선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다. 심사에 따라 적합한 기관이 없으면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라. 선정기관(단체)은 사업 관련 교육 참석해야 하며, 현황 현장점검 등 우리원이 주관하는 사업에 적극 협조해야 함
- 마. 최종 사업선정 후 진흥원의 제안사항에 따라 사업실행계획서는 보완될 수 있음

지원 불가 항목

- 경상운영비: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공요금 등
- 자산취득 경비: 사무기기 등 자산성 물품 구입비 등
- 업무추진비: 급식비, 사례비, 접대비 등
- 행사 부대 경비: 식비, 경품비, 기념품비, 단체복, 단순 다과비 등 ※ 자부담 편성 가능

- 바. 지원금이 결정된 후 세부적인 집행 및 정산방법은 우리원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 등에 따라야 함
- 사. 기타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및 제반비용 처리는 해당 기관·단체에서 부담함
- 아. 다음의 경우 사업비 지원 중단 및 회수 조치함

사업비 중단 및 회수

- 주제와 관련 없는 항목이나 집행 불가항목에 사용한 경우
- 운영계획서에 따른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경우
- 정산서의 미제출, 허위증빙 등 지원금을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밝혀진 경우

- 자. 공모사업 강사진, 학습자에게 사진 촬영 및 녹화 가능성에 대한 사전 고지 및 동의 필수
- 차. 우리원에서는 필요시 신청기관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